

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

□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

-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채무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무상환액의 납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

□ 제도취지

- 대학생 또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었으나 폐업·실직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일정기간 상환을 유예하여
 - 재학 중 또는 구직·재창업 준비기간 동안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의무상환액 미납으로 인한 연체금 부과 등 불이익 예방

□ 대상자 및 신청요건

- 대학생인 경우
-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폐업한 자, 실직(퇴직)자,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
 - (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 판정) 연간소득 중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금액의 합이 해당 연도의 상환기준소득 보다 적은 경우

※ 경제적 사정 곤란 여부 판정 기준

- ① 폐업(사업소득 단절) : 근로·퇴직·양도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
- ② 실직·퇴직·육아휴직(근로소득 단절) : 사업·퇴직·양도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
- ③ 실직·퇴직·육아휴직과 폐업이 모두 발생(근로·사업소득 단절) : 퇴직·양도소득금액의 합이 상환기준소득보다 적은 경우

□ 신청기간

- (사업소득자 고지분)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
- (재직자 통지분)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(7.1. ~ 다음해 6.30.) 종료 1개월 전까지
- (퇴직자 통지분)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 1일부터 납부기한 3일전까지

□ 신청방법

- 상환유예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신청하거나 국세청 ICL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 - (대학생)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 - (폐업자, 실직(퇴직)자, 육아휴직자) 폐업사실증명, 퇴직증명서,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

□ 유예기간

- 대학생
 - 신청일부터 4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납부
- 폐업자, 실직(퇴직)자, 육아휴직자
 - 신청일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의 12.31일까지 납부

□ 상환유예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채무자는 징수유예를 활용

<상환유예와 징수유예 비교>

구분	상환유예		징수유예
	대학생	폐업, 퇴·실직, 육아휴직	
요건	대학생	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*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하여 판단	국세징수법 준용 * 세무서장의 판단에 따라 유예
신청기간	· 고지분: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납부기한 3일 전까지	좌 동	· 고지 납부기한 내 · 체납 후 독촉기한 내
	· 통지분: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* 납부통지의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	· 통지분: 통지서를 받은 해의 6월1일부터 원천공제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* 납부통지의 경우 납부기한 3일 전까지	
유예기간	신청일~4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	신청일~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	9개월 이내
대상소득	사업·근로소득에 의해 통지·고지된 의무상환액으로서 체납 발생 전 의무상환액		소득 종류에 제한 없이 고지된 의무상환액
자율납부	상환유예 기간 중이라도 여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예된 의무상환액 납부 가능		· 납기 도래분 개별 통지 · 유예기간 내 납부 가능
근거	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		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0조